

zoomin

직무발명보상제도 (4)

직무발명보상규정(예시)

- 본 예시 규정은 국내·외 직무발명 운영실태 및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예시만을 표본으로 삼아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으로 수정·보완하여 회사의 사규로써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규정(예시)

〈○○○주식회사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19○○년 ○월 ○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산업체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 「자유발명」이라 함은 직무발명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을 말한다.
-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임원, 직원 등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특허관리부서」라 함은 회사의 산업체재산권에 대한 기획, 조사, 관리등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승계)

①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단,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할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 회사는 발명을 한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

제4조(관리부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에 관한 제반업무는

특허관리부서가 그 운영을 주관한다.

제 2 장 발명의 신고 및 출원

제5조(발명의 신고)

① 종업원이 자기의 업무에 관하여 발명을 한 경우 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발명내용 및 승계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명신고서와 함께 특허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① 특허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평가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후 심사결과통지서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여부
2. 권리의 승계여부
3. 발명신고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결정
4. 국내 및 해외 출원여부
5. 출원시·심사청구여부

② 특허관리부서의 장은 신고된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니거나, 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출원)

특허관리부서의 장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발명의 승계결정일로부터 4월이내에 회사명의로 출원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회사귀속)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명자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별도 양도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회사로 귀속된다.

제9조(재심신청)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명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재심신청은 별지4의 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특허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관리부서의 장은 재심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상조사를 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재심결과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원의 제한)

① 발명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가 아니면 임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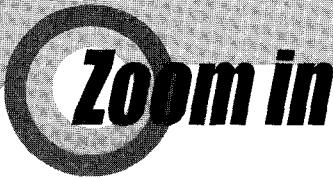
② 회사는 직무발명을 출원함으로써 회사의 기밀이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회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출원을 유보할 수 있다.

③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상

제11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회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때에는 특허법 제40조제1항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구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출원유보보상, 실시 및 처분보상, 방어보상으로 구분한다.

제13조(출원보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이 출원된 경우 회사는 발명자에게 특허 10만원, 실용 5만원, 의장 3만원의 출원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등록보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이 등록된 경우 회사는 발명자에게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출원유보)

① 회사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후,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원을 유보한 경우, 출원유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당해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발명이 산업체산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발명을 한 종업원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발명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사용자 등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6조(실시 및 처분보상)

① 회사는 당해 발명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허락 또는 양도하여 수입이 있을 경우 발명자에게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당해 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

으로 인하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 지급하되, 매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방어보상)

① 종업원이 국·내외 경쟁사의 산업체산권에 대하여 선행 증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종업원이 회사의 산업체산권을 타사가 침해한 사실을 발견하여 특허관리부서에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공동발명자에 대한 보상)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발명을 한 종업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9조(전직,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항의 권리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제20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모인출원에 의하여 무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21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이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임원급으로 보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③ 부위원장은 특허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종업원 대표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의 조사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 의결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제6조 제1항의 각호에 대한 결정
 -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가치평가 및 등록보상금액의 결정
 - 4. 제27조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
 - 5. 산업재산권의 양도, 실시하여 및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6. 직무발명보상규정의 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간사)

-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을 정리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사)

-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 ·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표결 결과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7조(자유발명의 승계)

-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회사 승계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보상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자 또는 발명자는 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 ① 이 규정은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관해서도 준용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 관계 규정 및 제안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